
2018년 15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18. 9.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2018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회의개요〉

- ◆ 일 시 : 2018. 9. 5.(수) 10:00 ~ 11:45
- ◆ 장 소 : 시청 본관 9층 공용회의실2
- ◆ 참 석
 - 심의위원 : 정호경, 성춘일, 심연섭, 이유진, 최진수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정책과장 (서기) 정보공개지원팀장
- ◆ 안 건 : 이의신청 1건, 직권심의 2건
 - (2018-54)잠실야구장 매점운영 실태 조사 결과보고
 - (2018-55)전 서울시의장 재직기간 중 수여한 표창장 명부(발급번호, 소속 포함) 등
 - (2018-56)사단법인 김해김씨 안경공파 종회 정관, 종중 규약(회칙)
-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인용
 - 인용
 - 부분인용

【 의안번호 2018-54 직권심의 】

안건명 : 잠실야구장 매점운영 실태 조사 결과보고

〈○○○ 위원〉

- 안녕하십니까?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정호경입니다. 오늘 심의회는 심의 위원으로 성춘일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이유진 위원님, 최진수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청구인 이의신청 1건, 직권심의 2건입니다.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건마다 상정안건에 대해 간사가 보고를 드리고 주심위원님께서 해당안건의 심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각 주심위원님들께서는 해당안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시고 5분 정도 내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안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결정사항은 위원장이 선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과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8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의안번호 제2018-54호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소관 직권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 주무관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라고 합니다. 팀장님이 시의회 업무보고 준비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위원〉

- 간사는 소관안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8-54호 운영기획과 소관 직권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잠실야구장 매점운영 실태 조사 결과보고 결재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에서는 위탁업체와 계약 당사자 간의 정보에 해당되며, 공개 시 개인 영업에 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비공개 결정의 적정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위하여 본 심의회에 직권심의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안전 소관부서 주무관은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주무관〉

- 아니요. 없습니다.

〈○○○ 위원〉

-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전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전은 주심위원이신 ○○○ 위원님께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내에서 자체 조사를 하신 겁니까?

<○○○ 주무관>

○ 네, 지도감독 차원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 위원>

○ 이것이 전반적으로 결과보고서라서 그런지 해당부분의 전반적인 형태의 평가 정도로 보이는데, 이것이 공개됐을 경우에 영업상의 침해나 이런 것들이 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주무관>

○ 임대료가 매장별로 얼마씩 산정돼서 납부되는지에 대한 사항과 계약방법이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하기는 했는데, 혹시 위원회에서 다시 판단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

○ 여기 임대료는 다른 주변 매장보다 싼 편에 속하는 겁니까?

<○○○ 주무관>

○ 아무래도 공공시설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한 번에 많은 관람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경쟁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분적인 것을 지우고 전반적으로 해도 크게 무리

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 자체가 다중이용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비공개 대상이라고 해도 국민의 위생,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더 이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참고자료에 위수탁 협약서도 있는데 청구인이 이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 주무관>

- 네, 그것은 아닙니다. 결과보고에 대한 자료만 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

- 잠실 외에 고척이나 목동야구장도 있고, 다른 구장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 주무관>

- 네, 위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그 경우도 동일한 겁니까? 만약에 잠실야구장에 대한 것들을 공개하게 되면 다른 구장에서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 주무관>

- 같은 사례라고 판단이 된다면 차후에 그쪽에도 동일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결정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 아직까지 공개한 것은 아니시고요?

<○○○ 주무관>

○ 네, 아직까지 공개한 것은 아니고, 이 건과 동일 건으로 지금 또 한 건 청구가 들어와 있어서 이 심의회 결과에 맞춰서 처리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

○ 결국은 조사결과보고서, 이것을 보여달라는 겁니까?

<○○○ 주무관>

○ 네, 이 당사자와 통화했을 때는 논문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한 사항이었습니다.

<○○○ 위원>

○ 제 생각에는 이것으로 논문을 쓴다면, 저는 목동도 달라고 할 것 같고, 서울시가 공개했으니 인천도 달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쓰려면 비교를 할 것이고, 몇 명의 관중이 있었는지 등이 필요할 텐데, 여기서 임대료가 공개되게 되면 사업과 관련해서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 주무관>

○ 고정임대료하고 변동임대료가 있고 변동임대료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13%가 납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매출이 추정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자체로는 어느 가게가 고정으로 하고 있는지, 변동으로 하고

있는지 기재는 안 되어 있죠?

<○○○ 주무관>

○ 세부적인 업체 간의 그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

○ 결국 예민한 사항은 임대료 금액부분인 것이죠?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 이것이 전대차계약 형식으로 개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이것이 예민한 문제는 아닌 것이고,

<○○○ 주무관>

○ 네, 임대료가 더 예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

○ 주로 매장별 임대료 납부한 것, 주로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겁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매장 점검 결과 청결상태나 안전사고 등과 같은 것은 예민하지 않습니까?

<○○○ 주무관>

○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혹시나 경쟁업체나 또 이것을 희망하는 업체에서 그 부분이 얘기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국민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 위원>

- 임대료는 매장마다 어떻게 금액이 정해집니까?

<○○○ 주무관>

- 주로 식음료매장에서는 계약 체결할 때 계약방식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판매금액의 연간 13% 정도입니다.

<○○○ 위원>

- 금액을 정하는 규정이 따로 있죠?

<○○○ 주무관>

- 네, 그것은 저희가 직접 계약은 하지 않아서 사실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정해진 규칙 안에서,

<○○○ 위원>

- 이것이 공유재산이죠?

<○○○ 주무관>

- 네, 공유재산입니다.

<○○○ 위원>

- 공유재산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수익 하게 했을 때는 금액을 정하는 것도 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임대차계약처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금액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 주무관>

○ 네,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 이 납부금액이 어떤 룰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라면 이것을 공개한다고 해서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을까요? 대충 어떤 매장이 있고 크기가 어떻다라고 하면 임대료는 대충 얼마일 것이라고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개인의 사업자의 연간 매출금액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변동임대료는 매출액의 13%가 임대료가 납부가 됩니다. 그러면 13%를 계산을 해 본다면,

<○○○ 위원>

○ 애초에 13%로 계약할 수 있고,

<○○○ 주무관>

○ 네. 대부분이 보시면 이것은 '14년도의 자료지만 고정임대료는 사실 많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변동임대료로 매출액의 13% 정도가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 만약에 일반 개인 소유의 빌딩 점포에 들어가서 임차료를 낸다고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인가는 경영상의 비밀로서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어느 정도 법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자유로운 개인 간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금액하고 같은 차원에서 비밀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위원>

- 서울시하고 직접 계약한 것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서울시가 구장 자체를 위탁을 주고 그 위탁업체와 입점업체가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 주무관>

- 계약관계가 조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

- 변동임대료 납부매장 전체 임대료 금액이 22억이라는 얘기잖아요? 4개 매장 67개소가 다 합쳐서 22억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과연 67개소의 매출액을 부분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자료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 위에 정액임대료는,

<○○○ 위원>

- 그것은 정액이니깐요. 변동임대료의 경우 공개시 매출액이 밝혀지니까 비공개 하자는 얘기인데, 67개 사업자 각각의 매출액은 알 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서울시에서 이 야구장 말고도 축구장도 있을 테고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계약 금액은 다 공개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시 측에서 보면 공개해야 될 이

유가 있는 것이지만 임차인 측에서 보면 그것이 영업과 관련되는 것이라서 지금 이 비공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직접계약 당사자는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관련법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계약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탁업체가 재관리한다라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까지는 자기 정보가 공개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 위원>

- 저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임대매장별 임대료 납부방법이 다 다른데 각 매장의 세부적인 산식까지 다 알려지지 않는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 위원>

-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계약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것이 공개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계약서 자체에 넣으면 오히려 당사자들이 사전에 인지하니까 그 부분은 훨씬 나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

- 보통 공공주체하고 시하고 직접 계약하는 계약서들은 공개하지 않습니까?

<○○○ 위원>

- 그렇죠. 공개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위탁업체가 중간에 끼어서,

<○○○ 주무관>

- 민간위탁 금액이나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매장의 계약정보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그럼 달리 볼 게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주무관>

- 그런데 민간위탁 수탁업체와 일반매장이랑 계약한 사례는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 위원>

- 이것이 나름 리딩케이스가 되겠네요. 앞으로 이 부분을 공개해서 위탁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으로,

<○○○ 위원>

- 저는 임대료도 공개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위탁을 해서 민간과 계약하는 사업이 꽤 많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공연하게 권리금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이 공개가 되면 수탁업체가 서울시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내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내고 들어가야 정상적이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개 되는 것이 오히려 다수한테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위원>

- 공개 대상 정보에 위탁업체와 일반업체가 체결한 계약내용에 좀 더 예민한 부분이 들어있다면 저희가 달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평가적인 부분만 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것을 일반적인 케이스로 위탁업체랑 일반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도 무조건 공개한다라고 선언적으로 하기보다는 건전이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매장 청결상태나 상품가격까지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품가격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 매장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비교할 수 있고, 사실은 그 물품을 한 번 사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라서 굳이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 위원>

- 가격은 비밀로서 보호될 정보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위생상태, 청결상태가 어떻게 보면 더 예민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측면에서 공개를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예민한 정보는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주무부서에서는 전체 의견을 어떻게 내셨습니까?

<○○○ 주무관>

- 저희는 사실 어디까지가 비공개일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

- ○○○ 위원님 혹시 더 추가로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 위원>

- 다 물어봤습니다.

<○○○ 위원>

- ○○○ 위원님.

<○○○ 위원>

- 네, 더 없습니다.

<○○○ 위원>

- 그러면 본 건 질문은 마치고 그냥 의견 여쭙보고 첫 번째 안건의 결론을 내리도록 합니다. 주심위원이신 ○○○ 위원님부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저는 원래는 부분공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임대료 자체도 특히 변동임대료 같은 경우 이것을 가지고는 개별 매출액이 추정되기는 힘든 것 같아서 전체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위원>

- 이것이 제3자 관련 정보로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까? 만약에 정보공개를 한다면 제3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다음에 공개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

- 이 조사결과보고가 해당업체한테도 다 통보가 된 겁니까?

<○○○ 주무관>

- 구장으로 통보가 되면 구장에서 개별적으로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니까 어느 정도는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 보통 서울시 홈페이지에 시설물과 관련해서 공개하는 경우 있죠? 실태나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올리지는 않습니까?

<○○○ 주무관>

- 별도 홈페이지에 올리지는 않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생산되는 문서 자체가 다 검색이 되는 것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 위원>

- 그럼 이것도 검색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주무관>

- 그때 당시에 이것을 부서에서 비공개로 결재를 올려서 문서 제목까지는 검색이 되는데 문서 내용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이 자체로 보면 조사결과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제목과 문서의 전체 성격으로 보면 굳이 제3자 관련문서라고 보기 어려운데, 내용 중 계약금액이 부분은 제3자 관련 정보로 보일 여지도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문서의 성격 자체는 제3자가 관련된 문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니까 저도 확실히 그 부분은 한번 의견을 여쭙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 저도 처음에 올 때는 임대료 납부방법은 비공개 할 수 있는 정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바뀌지 않았는데 매장별 임대료 납부방법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고 나머지 공개하는 것은 부분공개 하는 형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누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각각의 매장별로 임대료는 알 수 없기는 하지만, 어디는 정액인데 어디는 변동이고 이런 것을 전혀 알 수 없을 정보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 방식하고 지급률은 어떻게 보면 사인이 체결한 계약으로서 보호해 줄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위원>

- 기본적으로 위탁을 할 때 계약서 자체를, 위탁 관련한 계약내용은 공개하는 것이죠, 주무관님?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런데 위탁업체와 사업자가 한 번 더 계약을 맺을 때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 위원님은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죠?

〈○○○ 위원〉

○ 네.

〈○○○ 위원〉

- 일단 제일 민감한 것이 임대료 납부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매장 점검 결과에 따라서 청결상태가 어떤지, 사고여부가 어떤지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업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 일반 두 번째 것은 이 시설이 공유재산이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행정사무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 체육시설설치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이런 규정에 의해서 협약이 체결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서울시를 대신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결상태나 국민들의 안전 같은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 다음에 임대료 납부도 결국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과 다름없게 되는 관리위탁을 하는 형태에 의해서 위탁을 한 것이고, 그것을 전대를 하더라도 결국은 전대라는 것이 처음에 위탁받은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범위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물의 사용료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건물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이라든가 관계 법령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 계약에 의해서 받다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사용료 징수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사인 간의 임대차계약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임대료 금액도 공개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주심위원님 의견처럼 전부 공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살펴보니깐 여기에 굳이 가려서 해야 될 만한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가 전부가 아닌가 싶고, 그 외에는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

- 저도 마찬가지로인데요, 저도 처음에 볼 때는 매장명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르게 보면 야구경기가 있는 날이 되면 사실 가두에서 불법적으로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 사실 자릿세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공개가 된다면 오히려 선순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가 위탁한 사람이 또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개하면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뒤에 청결상태 부분도 내용상 포괄적인 부분이고 개별매장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신뢰를 얻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개별매장의 식재료나 혹은 근무자의 상태나 가격을 비교했다 라면 문제가 될 텐데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은 충분히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주심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

- 저도 조금 의견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 저는 청결상태나 변동임대료 이 부분은 공개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액임대료 부분이 공개해도 되나라는 약간의 의구심은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바꾸실 생각이 없으시면 그냥 결론으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공개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 위원>

○ 저는 부분공개 의견이어도 무방합니까?

<○○○ 위원>

○ 네, 무방합니다. 어느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까?

<○○○ 위원>

○ 저는 매장임대료 납부방법이요.

<○○○ 위원>

○ 임대료 부분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계 결과 참석위원 5명 중 4명이 직권심의 건을 인용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 네.

<○○○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8-54호는 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 퇴장)

【 의안번호 2018-55 이의신청 】

안건명 : 전 서울시의장 재직기간 중 수여한 표창장 명부(발급번호, 소속 포함 등)

<○○○ 위원>

○ 의안번호 제2018-55호 의정담당관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안건 소관부서 팀장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서울시의회 의정담당관 교류협력팀장 ○○○라고 합니다.

<○○○ 주무관>

○ 의정담당관 교류협력팀 ○○○입니다.

<○○○ 위원>

○ 간사는 의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8-55호, 의정담당관 소관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 소속 활동가로서 前 서울시의장 재직기간 중 사용한 업무추진비 및 표창장 수여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였으

나 주관부서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을 안내하고, 표창 수여 내용에 대해서 시민의 소속과 성명의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단체가 제보한 건을 게시된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서 확인할 수 없고, 표창 내역에도 일부 누락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보한 건이 어느 예산항목에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하여 추가 문의하고, 기공개된 표창 내역의 소속과 발급번호를 공개해 달라고 재차 정보공개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주관부서에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라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근거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공개 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여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는 막연한 비공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안전 소관부서 팀장은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 팀장>

-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

-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전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전은 주심위원 이신 ○○○ 위원님께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지금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이 이의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부내용에 비추어보면 업무추

진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제보한 음식대금, 이런 것들이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 예산항목에서 사용한 것인지 문의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 두 번째는 표창장 명부인데, 이것도 일부 부분공개를 했는데 그중에서 표창장 발급번호와 민간에 대한 소속을 밝혀달라.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죠?

<○○○ 팀장>

- 네.

<○○○ 위원>

- 그런데 정보공개법상 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은 문서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것이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질의는 일단 정보는 아닌데, 혹시 그런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서면을 요청하는 것으로 선회해서 해석한다면 그런 서면이 존재합니까?

<○○○ 팀장>

- 아니요. 그 청구인이 제출한 첨부물을 보면 ‘동원참치, 2017년 일자 불상, 35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개된 의장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찾을 수 없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내역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첨부물의 내용은 2017년도에 대부분이 일자 불상, 아니면 몇 월,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장소도 부정확하고 먹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위원>

- 청구인은 그것을 어떤 예산으로 썼는지 알고 싶은 것이죠?

<○○○ 팀장>

○ 네.

<○○○ 위원>

○ 업무추진비라고 예산을 했는데 보니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상에 맞는 것으로 안 나오니까 이것을 어디에 썼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고요.

<○○○ 팀장>

○ 그렇죠.

<○○○ 위원>

○ 그런데 이와 같은 취지로 예산으로 썼는지에 관한 문서는 공무원들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 팀장>

○ 그렇죠. 첨부자료 자체도 신빙성도 없을 뿐더러 출처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내역이 식사장소와 일자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보를 부존재하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있어야 저희가 찾을 수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도 찾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

○ 표창장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만약 발급번호가 공개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 팀장>

○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 위원>

○ 알려줘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 팀장>

○ 네.

<○○○ 위원>

○ 지금 이름은 김XX 아무개 이렇게 해서 이름 실명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누가 어떤 표창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이미 했고요.

<○○○ 팀장>

○ 네.

<○○○ 위원>

○ 그런데 그 공개된 사람이 자기가 표창 받은 발급번호까지 공개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불리한 징계조치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 팀장>

○ 네.

<○○○ 위원>

○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절차나 방법, 이런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도 없는 것이죠?

<○○○ 팀장>

○ 일단 발급번호 자체는 저희도 수사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前 의장님이 사용한 표창에 대해서만 요청을 했는데 추가요청을 하면서 의장이 아닌 다른 의원들도 추천한 건수를 전부 다 물어보면서 더불어 발급번호를 물어왔습니다.

-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전임자가 강동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서를 썼는데 의장의 추천건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前 의장의 건수와 다른 의원의 추천 건수를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수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조례상에는 추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지는 않지만 의원 간의 추천 건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시민단체가 공개 요청한 모든 의원의 추천 건수와 발급번호가 다 공개됐을 경우에는 지금 강동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하고 많은 부분이 겹친다고 보았습니다.

<○○○ 위원>

- 추천 건수는 공개되어 있습니까?

<○○○ 팀장>

- 前 의장의 추천 건수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 위원>

- 前 의장 것은 공개되어 있죠? 몇 년도 몇 건, 몇 년도 몇 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 팀장>

- 그렇죠.

<○○○ 위원>

- 그런데 거기에다가 발급번호만 더 추가해 달라는 것이니까,

〈○○○ 팀장〉

- 그 의장의 발급번호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의 추천 건수와 발급번호를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

- 참고자료 되어 있는 표창 수여내역 전체를 지금 공개해 달라는 것이죠?

〈○○○ 팀장〉

- 그렇죠. 저희는 이것을 자체판단을 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간 형평성이 문제가 돼서 지금 강동경찰서에서도 자료 요구 받아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적으로 저희가 공개해 버리게 되어서 저희가 부담이 너무 커서,

〈○○○ 위원〉

- 前 서울시의장이라고 하셨는데 양준욱 씨가 現입니까, 前입니까?

〈○○○ 팀장〉

- 前 의원입니다.

〈○○○ 위원〉

- 이 청구할 당시에는 현직이었나보죠? 現이라고 되어 있어서,

〈○○○ 팀장〉

- 7월 1일 자로 의원이 변경되었습니다.

〈○○○ 위원〉

○ 7월 1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현직에 있었지만 지금은 전직이기 때문에 前이라고 하셨군요. 그런데 일단 정보공개청구서 자체에서는 양준욱 씨, 당시 現 서울시의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표창장, 이렇게 청구를 했고, 그것이 일부 공개하고 일부 비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의신청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만 일단 판단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별도로 다른 의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청구 하려면 또 정보공개 청구를 따로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보공개 청구할 때 당시에는 現 의장 것만 공개 청구를 한 것이죠?

〈○○○ 주무관〉

○ 네.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 위원〉

○ 지금은 어디서 전체위원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이의신청을,

〈○○○ 주무관〉

○ 8월 달에 저희 청구 들어온 건을 보시면 ‘첨부해 드린 표창장 번호와 귀 의회가 공개한 자료를 대조한 결과 2018년의 경우에는 3월 5일까지 천 몇 백 건을 은폐하고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양준욱 의장님이 추천하신 표창 건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추천했던 표창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분이 은폐했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의원님의 추천 건도 공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속이라는 것은 민간 소속에서 어떤 소속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를 말하는 것일 것이고, 만약에 개인 업체를 운영하면 개인 업체도 무슨 상회,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을 소속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 주무관〉

- 네. 단체명이랑 기관이랑 그런 것입니다.

〈○○○ 팀장〉

- 그런데 소속이 없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있는 것을 공개해 달라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표창번호와 마찬가지로 단체에 그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개인정보에 위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안점을 둔 것은 수사에서도 의원간 형평성과 양준욱 前 의장이 너무나 많은 표창을 다른 의원에 비해서 했다는 것으로 지금 진술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 위원〉

- 소속을 표창 수상자의 개인적인 정보로 개인의 비밀 보호차원에서가 아니라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고요.

〈○○○ 팀장〉

- 네.

〈○○○ 위원〉

- 그런데 소속이 밝혀진다고 해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 팀장〉

-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에 대해서 저희 자체판단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참고인조사를 받은 전임자의 얘기를 들어서 그런 식의 수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해 버리면 다른 의원에 비해서 前 의장이 얼마나 많이 추천했는지가 나타나게 되어, 자체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비공개로 한 겁니다.

〈○○○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 자료인데다가 이것을 공개했을 때 수사 자체에 지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사를 그런 식으로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객관적 자료라서 이것 자체를 없애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 보통 수사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피의자 입장에서 증거를 없앨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 그런 면은 일단 보이지는 않고요.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영장을 통해서 얻은 기밀사항이나 이런 부분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비밀보호가 된 정보도 아닌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의원별 표창내역을 공개하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을 주나 개별 의원별로 지정해서 주나 저는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팀장〉

- 네, 맞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충분히 공개자료이기는 한데 지금 고발한 단체와 정보공개를 요청한 단체가 같은 곳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미 같은 내용을 듣고 있을 텐데 고발자가 정보공개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면 수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이 갈 지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에 비공개를 한 것이지, 말씀하신 대로 개별 의원을 다 요구하게 돼서 나중에 그것을 합쳐보면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위원〉

-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발인은 경찰에서 참고인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어떤 자료를 갖고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찰에서는 수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고발인한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 팀장〉

- 그렇죠.

〈○○○ 위원〉

- 고발인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수사에 들어가 있는지 궁금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수사 진행이 안 된다면 의원별로 표창내역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이 자료를 경찰에 다시 제출을 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밖에 예상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같은 내용입니다.

〈○○○ 팀장〉

- 이 부분은 수사가 아니었더라도 충분히 공개가 됐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의원 형평을 고려하여 쿼터제 등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공개 청구를 했으면 다 공개되었을 것이죠?

〈○○○ 팀장〉

○ 예, 맞습니다.

〈○○○ 위원〉

○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공개해도 된다는 입장이지요?

〈○○○ 팀장〉

○ 그렇죠. 그런데 이미 경찰서에서 공문이 온 상태이고,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공개를 판단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존재하는 객관적인 팩트를 그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 위원〉

○ 이 정보가 고발된 사건의 혐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큰 단서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니까 전달되어야 될 것 같은데, 부담스러우신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주무관청에서는 이것을 고발인에게 공개해서 그것이 고발인을 통해서 수사에 들어가는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위원〉

○ 이것은 이미 다 경찰서에 간 자료인 것 같은데, 경찰서에 있는 것이죠?

<○○○ 팀장>

○ 네. 경찰서에 공문으로 표창에 관련된 자료 전부를 다 요구해서 제출했습니다.

<○○○ 위원>

○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팀장>

○ 네, 맞습니다. 저희도 찾아보려고 했지만, 정보공개는 아시다시피 있는 자료를 공개할지 말지 판단하는 것인데, 이것은 찾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일자가 안 나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위원>

○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썼느냐 안 썼느냐. 비예산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수사를 했을 것 같은데 정보가 없는 것을 공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창장 문제는 어찌됐던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아까 업무추진비 부분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부재한 자료로 보는 것이 옳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위원>

○ 혹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법에 따라서 민원으로 처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팀장〉

- 민원이라고 보기에 이 청구하신 데가 ○○○○○○인데 서울시에 굉장히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하고, 주기적으로 정보공개를 일단 요청해보고, 홈페이지에 그렇게 많이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 위원〉

- 알겠습니다.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우리 심의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참고사항으로 여쭙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의견을 모으는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님이 주심이시니까 ○○○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 먼저 정보공개 청구한 청구서를 보면 前 의장, 당시로 現 의장에 대한 것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이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 그렇게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관련된 부분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라는 것이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것이지, 궁금한 것을 알려달라는 질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법령에서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당연히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 이것을 어떤 예산항목에서 사용했는지 적혀있는 문서를 공개해 달라라는 취지로 본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존재로 공

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공개할 수 없는 것이고요.

- 표창내역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누가 어떤 표창을 받았는지 내역은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소속, 발급번호 같은 것도 다 공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4호에 걸리느냐라는 것을 담당부서에서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 같습니다.
- 4호 문제는 일단 수사에 관한 사항인 것은 맞지만, 비공개를 위해서는 그것으로 족하지는 않고 수사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히 지장을 초래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지도 않고, 이 자료는 이미 다 경찰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수사상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 공개해도 수사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번 부분에 소속과 발급번호는 추가해서 공개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부존재가 맞는 것 같고, 표창장 수여내역은 다 공개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

- 그러면 이번 건은 저도 동의합니다. 집계 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 건을 인용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 네.

<○○○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8-55호는 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 퇴장)

【 의안번호 2018-56 직권심의 】

안건명 : 사단법인 김해김씨 안경공파 종회 정관, 종종 규약(회칙)

<○○○ 위원>

○ 의안번호 제2018-56호 문화예술과 소관 직권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안건 소관부서 팀장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장 ○○○입니다.

<○○○ 주무관>

○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비영리법인 담당 ○○○입니다.

<○○○ 위원>

○ 반갑습니다. 간사는 문화예술과 소관 안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8-56호 문화예술과 소관 직권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사단법인 김해김씨 안경공파 종회 정관 및 안경공파 종종 규약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에서는 종회 정관에 대하여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비공개 결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위하여 본 심의회에 직권심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안전 소관부서 팀장은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팀장〉

- 이 정보공개 청구한 법인이 다른 일반법인과 다르게 김해김씨 종중에 관한 정 관이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해보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공개될 경우에 종중의 고유한 사업에 침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비공개 사유 호수가 다른 것이 아니죠?

〈○○○ 팀장〉

- 같은 호수입니다. 7호입니다.

〈○○○ 위원〉

-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고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전은 주심위원이신 ○○○ 위원님께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대부분의 종회들이 비영리 사단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굳이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과 법인이 그 차이가 있습니까?

〈○○○ 주무관〉

-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련 근거법이 민법과 문체부 규칙인데요, 문화예술활동이 전제되지 않는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현재는 허가를 해 주고 있지 아니한데, 이 당시 2002년도에는 담당자가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넓게 포괄하는 의미로 봐서 사단법인 요건에 충족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허가를 했던 부분 같습니다.

〈○○○ 위원〉

- 비영리 법인일 경우에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종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묘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장학사업도 하고, 그에 대한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수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전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당연히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이 반드시 있어야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 위원〉

- 법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그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반 사단일 경우에는 제가 기부를 하더라도 사적으로 쓰는 돈이 될 것이고요, 재산관리 자체도 사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종중도 그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종중도 인터넷에 모든 정관을 다 공개합니다. 그러나 종훈의 경우, 여기

서 회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징계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관 같은 경우는 저희 문중은 이미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정관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 그런데 법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비용처리나 여러 가지 상당수의 혜택을 받게 되고,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공개해도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것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고 판단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 주무관〉

- 일반적인 종중은 종중 자체로도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경우는 법적인 단체로 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김해김씨 종파라고 해서 당연히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은 별도의 회원 승인을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행하는 사업의 내용이 저희가 비공개 사유로 든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민원인께도 종회 구성원임이 확인된다면 저희가 제공을 하겠다는 내용까지는 안내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 위원〉

- 여기 회원의 자격을 보면 ‘본 종회의 회원은 본 종회의 설립 취지에 찬성하는’이라고 했는데, 저희 종회 같은 경우는 ○○○씨 누구의 후손은 다 회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는 가입한 사람들만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재산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 주무관〉

-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종회가 상당히 배타적인 회원 멤버십을 할 수 있으니 저는 당연히 정관은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겁니다. 종회는 본래 어떤 시조가 되는 분의 후손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 정관 자체는 상당히 배타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 주무관〉

- 저희가 종파 중에서의 일부 종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들어왔던 기본재산이나 운영재산을 봤을 때도 명확하게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는 부분에 속하시는 분들만 회원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인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김해김씨 안경공파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 위원〉

- 여기가 되게 큰 종파니까 이 안경공파의 후손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공파의 후손들 중에서 여기에 못 들어가신 분들은 자기 조상의 묘지의 관리라든지 혹은 족보 간행이나 등등에 대해서 배척되는 겁니다. 회원으로 들어가려면 심사도 받고 인증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정관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타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 위원〉

- 우리 ○ 위원님의 질문 속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완질문 해 주십시오.

〈○○○ 위원〉

- 형식이 법인인 것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

- 그렇죠.

〈○○○ 위원〉

- 한편으로 보면 법인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당초 종종 구성원들끼리 재산과 종종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것이고, 종종 중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라면 형식이 법인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르게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 정보공개로 요청했다는 것은 서울시 관할인 법인 형식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형식으로 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사안이면 법원에 종종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했을 텐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공개가 되거나 했어야 될 사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위원〉

- 저는 일단 내용 자체가 법인의 사업이나 경영상 영업에 관한 비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원자격이나 이런 것만 들어있고 이것 자체로 회원의 재산관계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오히려 뒷부분 부칙에 보면 설립자 전원 기명날인 하는 부분에 이름하고 주소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라서 이 부분은 사실 공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여기가 사단법인이면 재산관계나 이런 법인 일부사항은 법인등기부등

본을 보면 다 나올 텐데, 거기서 공개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구체적인 재산액수나 이런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부서에서 말씀하신 7항 가지고는 비공개 사유로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원래 법인 정관은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법인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를 자기 스스로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종으로 그대로 둘 때는 구성원들끼리 해도 되는데, 법인이 되는 순간 어떤 단체인지를 명백히 밝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관은 오히려 공개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

○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해당되는 정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 팀장>

○ 네.

<○○○ 위원>

○ 가지고 있는 이유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로 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겁니까?

<○○○ 팀장>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러면 그 정관을 받아서 허가여부를 결정할 때 무엇을 주로 봅니까? 정관에 있는 목적이라든지 사업 같은 것을 보고 목적이 문제가 없는지, 사업이 추진 가능한 사업인지, 이런 것을 주로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불가하거나 허가하거나 하기 위해서 정관을 보는 것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그 다음에 정관에 보면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립자의 개인 성명, 주소, 기명날인 부분이 들어있는데 원본 거기에는 이름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그 부분은 공개할 생각은 없으신 것이고요.

<○○○ 주무관>

○ 네.

<○○○ 위원>

- 만약에 공개하더라도 그것은 빼고 공개할 생각이실 것 같고요.
- 그 다음에 보유재산목록을 별지1로 붙여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하신 것에는 별지가 없어서 지금 볼 수는 없는데 이 비영리법인의 고유재산을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습니까?

<○○○ 주무관>

- 보통은 정관에서 반드시 별지로 붙어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서류를 찾아보니까 이 당시 서류 중에는 정관에 별지로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예 재산총괄목록표가 별도로 있어서 그 당시에 재산이 확인가능했었기 때문에 누락됐던 부분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 부동산 같은 경우 등기부등본에 나오겠고, 골동품의 경우 문화재면 공시가 되어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족보라든가 이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목록에 다 쪽 나와 있을 텐데 그 목록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종종으로서는 공개되는 것에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설립자 성명, 주소, 기명날인 부분은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아마 다 일치된 의견인 것 같고, 보유재산목록까지도 과연 공개해야 되는지 여부는 조금 논의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첨부된 것은 도장을 막 찍은 것이 첨부됐는데 정관을 공개하라고 할 때 이 청구 취지는 도장을 찍어놓은 허가 원본을 공개하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

- 그런데 신청서에 붙여서 낸 것, 이것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니까요. 원래는 종중이 갖고 있고, 종중원이라든가 이 부분은 종중에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법인 허가 받기 위해서 원본을 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원본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주더라도 도장은 찍혀서 나오니까요.

〈○○○ 위원〉

- 이 종중 외에 일반적인 다른 법인들에 대한 정관 청구는 없었습니까?

〈○○○ 주무관〉

- 최근에 2건이 있었는데요, 그 경우는 명확하게 사단법인의 직인이 날인된 법인의 공문을 통해서 어떤 서류를 열람하고 싶은지 청구를 하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는 정관을 다 공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주무관〉

- 그렇죠. 저희 쪽에 허가된 사단법인의 명의로 단체 공문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직접 교부를 하거나 열람을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 위원〉

- 재산목록까지 다 줘니까?

〈○○○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현재 회원이나 임원이신 부분들이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별도의 제약 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구성원이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공개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 위원>

- 청구인 신분은 알 수가 없는 겁니까? 다른 사단법인의 경우에 법인의 구성원
이 아닌 경우에도 청구하면 준다는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구성원이 아닌 경우는 아직 청구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 위원>

- 구성원인 경우 서울시에 와서 달라고 해도 준다는 말씀이시죠?

<○○○ 주무관>

- 네.

<○○○ 위원>

- 제가 볼 때는 사단법인에서 잘 안 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소송으
로 다투어야 되니 구성원 입장에서는 그런 절차가 번거로워서 서울시에다가
청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제 생각에는 구성원이 달라고 하는지, 구성원이 아닌 자가 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위원>

- 주무부서에서는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청한 사례가 없다고 얘기

를 하셨는데, 제가 봐도 구성원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하필 법인인 것 때문에 그것이 달라질 것이 있을까라는 것이 저의 처음 생각이었는데, 법인으로 일단 등기가 된 이상 법인의 정관은 공개를 할 수밖에 없고, 절차에 따라서 공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을 취한 이상 종중원인지 회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정관이 공개될 것을 감안해서 법인등록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그것이 싫었으면 보통처럼 비법인 사단의 지위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법인의 혜택을 누리를 위해서 그런 규제를 받겠다는 의사로 법인신청한 것이어서 이것은 공개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 위원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발기인 설립자 주소, 성명부분과 재산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 재산목록의 경우 이것이 당초 별지로 같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까지 일부러 붙여 가지고 줄 수는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 주무관>

- 별도의 다른 검토자료로는 있는데 정관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위원>

○ 청구인이 회칙까지 요청한 것 같은데 회칙은 갖고 계신 것이 없으신 겁니까?

<○○○ 주무관>

○ 네. 없습니다.

<○○○ 위원>

○ 그것은 부존재한 정보니까 부존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아까 별지 재산목록 부분은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었고, 심의 제출서류에만 누락됐는지 알았는데 아예 낼 때부터 없다는 것이면 원본에 없는 것이니까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다른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 그러면 제가 논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논의가 전체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은데요, 정관을 공개하는데 설립자 성명, 주소부분은 비공개하는 것이고 회칙은 정보 부존재입니다.

<○○○ 위원>

○ 서명까지 공개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서명이 나가면 이름이 다 공개되는 것이어서,

<○○○ 위원>

○ 이름이 왜 비공개인 것이죠? 주소만 비공개해도,

〈○○○ 위원〉

- 지난번에도 법인 대표자 주소까지 같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 위원〉

- 일단 서명은 확실하게 비공개해야 될 것 같고요, 주소도 비공개해야 될 것 같고 이름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립자 이름은 공개해도 되는 것인지.

〈○○○ 위원〉

- 우리가 이 부분은 법인의 설립자가 누구인지를 공개해야 하는가, 혹시 그것을 개인정보로 봐서 비공개해야 되는가, 이런 차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법인의 대표자는 다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위원〉

- 대표자는 공개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쪽 설립자들을 다 공개하는 것이 맞는가.

〈○○○ 위원〉

- 대표자는 공시가 돼도 설립자는 다른 데 공시가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데 공개되는 것은 없죠?

〈○○○ 주무관〉

- 등기부등본 전부사항증명서에 말소사항까지 다 출력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다

나오기는 합니다.

<○○○ 위원>

○ 선택하지 않을 때만 안 나온다는 것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다 공개해야 되겠네요.

<○○○ 위원>

○ 주소도 다 나옵니다. 서명만 안 나옵니다.

<○○○ 위원>

○ 주소도 다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까지 깊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소부분하고 서명부분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성명은 공개하는 것으로 이 건을 결정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 서류에 간인이 있어 가지고, 잘 보면 보입니다.

<○○○ 위원>

○ 간인도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 위원>

○ 그래서 그냥 정관을 하나 받아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위원>

○ 정관을 받아서 준다고 그러면 제 느낌에 여기에서는 아마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 같은데요.

<○○○ 위원>

○ 어차피 이름을 공개하면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중요하지 않죠. 맞습니다.

<○○○ 위원>

○ 그래도 사용하는 인장은 개별 개인적인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서명하고 주소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간인 부분에 도장이 찍혀있는데 보니까 페이지마다 다 중간에 찍혀있어서 이것을 지우다가는 정관 규정까지 다 지워질 것 같은데, 행간만 지워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완전한 도장 같으면 사실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일부분 반만 찍혀 있어서,

<○○○ 위원>

○ 알려고 하면 겹쳐 보면 그래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출력된 것을 이렇게 겹쳐서 붙이면 그대로 도장모양이 나오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기술적으로 적절히 처리하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 집계 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직권심의 건을 부분인용 한다는 의견이므로 부분인용하고, 주소, 서명부분만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 네.

〈○○○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8-56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 퇴장)

【 직권심의 대상 선별 결과 】

〈○○○ 위원〉

- 다음으로 비공개 결정 건 중 직권심의 대상 선별 결과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사는 선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직권심의 대상 선별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분기 비공개 결정 건 중 기심의 완료 건을 제외한 92건에 대해 비공개 적정여부를 자체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공개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2건을 직권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금일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공개여부 재검토 결과를 각 부서로 통보하여 향후 동종정보 청구 시 결정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원심의 선별 보고자료 폴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이것으로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32분, 회의종료】